

안전인증기관 업무수행능력 평가표 및 세부 평가내용

분 야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배 점	취득점수
합 계			1,000	
A 운영체계	소 계		400	
	A.1 운영관리체계	1.1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수립	30	
		1.2 부서별, 개인별 업무관리체계	30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인적기준)	2.1 전문기술력 추가 확보 여부	60	
		2.2 직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	60	
		2.3 인증심사원의 인증기준 이해도 향상 활동	60	
		2.4 인증심사원의 장비 활용수준 향상 활동	60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물적기준)	3.1 안전인증 장비 유지·관리 적정성	50	
		3.2 법정장비 및 추가장비 활용 실적	50	
	가 감 점 항 목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4.1 최근 2년 이내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인증 수행 인력에 대한 포상 실적	+10	
		4.2 최근 2년 이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처분개월수별 -15점, 최대 -80점)	-15~ -80	
B 업무성과	소 계		600	
	B.1 안전인증의 충실성	1.1 안전인증 접수·처리대장 및 심사서류 관리	150	
		1.2 안전인증 관련 업무처리 규정(고시, 내규 및 지침 등) 준수 여부	100	
		1.3 안전인증 심사결과 적정성	150	
	B.2 만족도 및 우수사례	2.1 안전인증 사업장 만족도	100	
		2.2 안전인증 우수사례(정성평가)	100	
	가 감 점 항 목	B.3 안전인증결과 신뢰도 3.1 안전인증 확인심사 적정성	-10~-100	
		3.2 안전인증 심사처리기간 초과 건수	-5~-50	

A 운영체계

A.1 운영관리체계

평가항목A.1.1	평가기준 (배점 : 30)	평가결과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수립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 적정하게 수립, 이행	☐ 30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 수립하였으나 이행이 미흡	☐ 20
	운영방침 또는 운영표준 수립하여 이행	☐ 10
	운영방침 또는 운영표준 수립하였으나 미이행	☐ 5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 미수립	☐ 0
주요 착안사항	○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수립 평가는 - 기관의 운영방침 및 안전인증 업무 운영표준을 수립하고, - 수립된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을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한다 ※ 운영방침 : 안전인증기관 운영계획, 연간 사업계획 또는 품질매뉴얼 등에 따른 운영방침 등 안전인증기관과 관련한 운영목표를 확인 ※ 운영표준 :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증업무 관련 매뉴얼, 내부업무처리 규칙, 지침 등 법령(고용노동부 고시 포함)을 제외한 자체적으로 작성·운영중인 업무처리 기준 ○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수립 평가 방법은 -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이행하였을 경우 “30” -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을 수립하였으나, 이행이 미흡한 경우 “20” - 운영방침 또는 운영표준 중 어느 하나만을 수립하여 이행하였을 경우 “10” - 운영방침 또는 운영표준 중 어느 하나만을 수립하였으나, 이행이 미흡한 경우 “5” -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을 미수립 “0”	

평가항목A.1.2	평가기준 (배점 : 30)	평가결과
부서별, 개인별 업무관리체계	부서별, 개인별 업무관리체계가 명확하고, 민원인이 해당 내용을 쉽게 파악할수 있음	☐ 30
	부서별, 개인별 업무관리체계가 다소 불명확하나, 민원인이 해당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음	☐ 20
	부서별, 개인별 업무관리체계가 다소 불명확하고, 민원인이 해당 내용을 파악하기 다소 어려움	☐ 10
	부서별, 개인별 업무관리체계가 불명확하며, 민원인이 해당 내용 파악이 불가능	☐ 0
주요 착안사항	○ 부서별, 개인별 업무관리체계 평가 - 기관의 부서별 담당업무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관리되며 - 개인별 담당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관리되는 등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 - 부서별, 개인별 업무관리체계를 민원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평가 ※ 부서 또는 개인의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문서화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인증 심사원의 업무분장에 따른 안전인증 수행여부를 확인함 ※ 민원인이 홈페이지, 홍보자료 등을 통하여 해당업무 담당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평가 ○ 부서별, 개인별 업무관리체계 평가 방법 - 부서별, 개인별 업무관리체계가 명확하고, 민원인이 해당 내용을 쉽게 파악할수 있는 경우 “30” - 부서별, 개인별 업무관리체계가 다소 불명확하나, 민원인이 해당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경우 “20” - 부서별, 개인별 업무관리체계가 다소 불명확하고, 민원인이 해당 내용을 파악하기 다소 어려울 경우 “10” - 부서별, 개인별 업무관리체계가 불명확하며, 민원인이 해당 내용 파악이 불가능할 경우 “0”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인적기준)

평가항목A.2.1	평가기준 (배점 : 60)	평가결과
전문기술력 추가 확보 여부	평가점수가 50점 이상	☐ 60
	평가점수가 40점 이상 50점 미만	☐ 50
	평가점수가 30점 이상 40점 미만	☐ 40
	평가점수가 20점 이상 30점 미만	☐ 30
	평가점수가 15점 이상 20점 미만	☐ 20
	평가점수가 10점 이상 15점 미만	☐ 10
	평가점수가 0점인 경우 “0”	☐ 0

주요 착안사항

○ 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 평가

-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원이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9의3’에 따른 인력기준 대비, 상위 자격, 학력 등 추가적인 전문기술력 확보 노력도를 평가

구분	법정 요구조건	확보기준 (최소)	추가 인정가능 전문기술력
계		9명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고소작업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를 소지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를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1명	1), 3) 기술사 추가 확보 2) 박사+ 경력 5년 이상
※ 관련분야 : 기계, 전기·전자, 산업안전 (기술사는 기계, 전기안전으로 한정)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7년(학사학위 이상은 5년 이상인 사람 각 관련 분야별 2명 이상(총 6명 이상))	6명	기술사 또는 박사 + 경력 5년 이상
	다. 용접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총 2명 이상)	2명	용접·비파괴검사 분야 기사 이상

구분	법정 요구조건	확보기준 (최소)	추가 인정가능 전문기술력
계		5명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1명	기술사 또는 박사 추가 확보
※ 관련분야 : 기계, 전기·전자, 금속, 화공, 가스	나. 관련 분야별로 다음의 자격기준 이상인 사람 각 1명 이상(총 4명 이상) 1) 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9년(학사학위는 7년 또는 석사 학위 이상은 5년) 이상인 사람 3)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7년(기사인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4명	

- 전문인력 추가확보여부 산정 방법

- 위험기계·기구 분야 : 기관에서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법정 최소 인력에 해당하는 인원들의 추가적인 전문기술력 보유여부에 따라 산식을 적용하여 평가 (단, ‘기술사’ 자격이 필요한 항목인 경우에는 해당인원 및 기타 인원기준을 제외하고 기술사를 추가로 채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전문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 방폭기기 분야 : 기관에서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 중 법정 최소 인력에 해당하는 인원들을 제외한 전문기술력 보유여부에 따라 산식을 적용하여 평가

- 평가점수 계산표

구분	항목	확보 기준	추가 인정가능 전문기술력	추가 전문기술력 보유현황	1명당 배점	득점
득점 계						점
크레인 등	가.	1명	1), 3) 기술사 추가확보 2) 박사+경력5년 이상	명	10점	점
	나.	6명	기술사 또는 박사 + 경력 5년 이상	명		점
	다.	2명	용접·비파괴검사 분야 기사 이상	명	5점	점

구분	항목	확보 기준	추가 인정가능 전문기술력	추가 전문기술력 보유현황	1명당 배점	득점
득점 계						점
방폭기기	가, 나	5명	기술사 또는 박사 추가확보	명	20점	점

○ 평가결과 산정

- 평가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 “60”
- 평가점수가 40점 이상 50점 미만인 경우 “50”
- 평가점수가 30점 이상 40점 미만인 경우 “40”
- 평가점수가 20점 이상 30점 미만인 경우 “30”
- 평가점수가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20”
- 평가점수가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10”
- 평가점수가 0점인 경우 “0”

평가항목A.2.2	직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	취득 점수	
평가항목A.2.2.1	평가기준 (배점 : 60)	평가결과	
직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전문성 향상 교육 이수	인증수행직원 교육훈련 관련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 결과가 80%를 초과하는 경우	☐ 60	
	인증수행직원 교육훈련 관련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 결과가 80% 이하, 60% 초과하는 경우	☐ 45	
	인증수행직원 교육훈련 관련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 결과가 60% 이하, 40% 초과하는 경우	☐ 30	
	교육·훈련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안전인증 전문성 향상 교육 실적이 있는 경우	☐ 15	
	교육·훈련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안전인증 전문성 향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 0	
주요 착안사항	○ 직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전문성 향상 교육이수 평가는 - 직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은 기관 종사자의 안전인증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자체 (내부)교육, 외부 전문교육 등을 포함하는 교육 계획 수립 여부를 평가 ※ 전문성 향상 교육은 안전검사 관련 기준의 이해, 장비활용 관련사항 및 안전 인증 수행에 필요한 전기·기계 이론, 비파괴, 용접, 재료 관련 교육 등 인증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인정한다. - 직원 교육훈련 계획은 기관내부절차에 따라 서면 또는 전산으로 작성되고 기관 운영책임자의 결재를 득하였는지 확인 ○ 직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전문성 향상 교육 이수율 평가는 - (교육수로 횡수/교육계획상 교육예정 횡수)×(교육예정 안전인증 수행인력/안전인증 수행인력)×100(%)으로 평가 - 내부 자체교육, 외부교육기관 교육 등 1회 16시간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를 말함 ※ 자체교육의 경우는 횡수에 관계없이 시간을 합산하여 16시간 이상인 경우 1회로 인정 가능 - 교육 수료증 등 객관적으로 교육을 이수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이수 여부 확인 ※ 단, 자체교육의 경우는 교육결과보고 또는 교육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연간 교육계획 수립 여부 확인 및 전체 안전검사 수행직원별 전문성 향상 교육 수료 횡수(1명이 2개 과정을 수료한 경우 2회로 평가)로 평가 - 전문성 향상 교육 실적이 있더라도, 교육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5"로 평가 - 연간 교육계획이 서면 또는 전산으로 수립되지 않고 전문성 향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0"		

평가항목A.2.2.2	평가기준 (배점 : 30)	평가결과
외부전문교육 이수여부	평가산식에 따른 외부 전문교육 수료율이 70% 이상	☐ 30
	평가산식에 따른 외부 전문교육 수료율이 40% 이상 ~ 70%미만	☐ 20
	평가산식에 따른 외부 전문교육 수료율이 10% 이상 ~ 40%미만	☐ 10
	평가산식에 따른 외부 전문교육 수료율이 10% 미만	☐ 0
주요 착안사항		

○ 외부 전문교육 이수 여부 평가

- 외부 전문교육은 인증검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외부 개설 교육 또는 강사초빙 교육 등을 이수한 수준을 평가한다.
- ※ 전문성 향상 교육은 안전인증 관련 기준의 이해, 장비활용 관련사항 및 안전 인증 수행에 필요한 전기·기계 이론, 비파괴, 용접, 재료 관련 교육 등 인증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인정한다.
- 교육 수료증 등 객관적으로 교육을 이수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교육 결과보고 및 교육자료 등을 통해 이수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교육별 수강시간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 A221. 평가항목의 16시간 이상 외부 교육 과정도 동 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중복평가 가능
- 교육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1회로 인정하고, 16시간 미만의 교육인 경우에는 참석시간을 합산하여 16시간 이상이면 1회로 계산한다.
- 1개 교육과정이 16시간 이상이라도 분할하여 산정하지 않음(예를 들어, 교육 시간이 32시간인 경우 16시간 단위로 나누어 2회로 인정하여서는 안 됨)
- 교육 수료 횟수는 직원 1명당 수료 횟수를 중복 산정하여 평가(예 : 1명이 2개 과정을 수료한 경우 2회로 평가)

○ 외부 전문교육 이수 여부 평가 방법

- 외부 전문교육 수료 횟수 / 안전인증 수행인력(명) × 100(%) 으로 평가
- 평가산식에 따른 외부 전문교육 수료율이 70% 이상인 경우 "30"
- 평가산식에 따른 외부 전문교육 수료율이 40% 이상 ~ 70%미만인 경우 "20"
- 평가산식에 따른 외부 전문교육 수료율이 10% 이상 ~ 40%미만인 경우 "10"
- 평가산식에 따른 외부 전문교육 수료율이 10% 미만인 경우 "0"

평가항목A.2.3	평가기준 (배점 : 30)	평가결과
인증심사원의 인증기준 이해도 향상활동	자체적 활동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계획에 따라 활동 및 평가가 이루어짐	☐ 30
	자체적 활동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계획에 따른 시행 및 평가가 일부 누락됨	☐ 20
	자체적 활동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자체적 활동 및 평가가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짐	☐ 10
	자체적 활동과 직원 수준에 대한 평가가 없음	☐ 0
주요 착안사항		

○ 인증심사원의 검사기준 이해도 향상 활동 평가

-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인증기준 이해 및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 향상·수준 유지를 위한 기관 자체적 활동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를 평가
- ※ 자체적 활동은 기관 내부적인 기술토론회, 자체교육 등 검사업무 수행과 관련한 검사원 자질향상을 위한 정기적·비정기적 활동을 모두 포함하며, 직원의 수준 평가를 위한 절차 및 평가결과 미비점 보완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 인증업무 수행 직원의 70% 이상의 인원에게 대해 검사기준 이해도 향상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를 인정하며, 70% 미만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단계 하향하여 평가한다.
- ※ 자체교육에 대하여는 A.2.2.1 평가항목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계획 수립 → 실행 → 직원 수준평가 → 미비점 보완” 등 기관 자체적인 활동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전산자료를 포함하여 문서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기술토론회는 계획 수립 → 토론실시에 따른 결과 문서가 있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

○ 인증심사원의 검사기준 이해도 향상 활동 평가 방법

- 인증기준 이해 및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향상을 위한 자체적 활동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계획에 따라 활동 및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30”
- 인증기준 이해 및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향상을 위한 자체적 활동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계획에 따른 시행 및 평가가 일부 누락된 경우 “20”
- 인증기준 이해 및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향상을 위한 자체적 활동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자체적 활동 및 평가가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0”
- 인증기준 이해 및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향상을 위한 자체적 활동과 직원 수준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경우 “0”

평가항목A.2.4	평가기준 (배점 : 60)	평가결과
인증심사원의 장비 활용수준 향상 활동	장비 활용수준 향상을 위한 자체적 활동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계획에 따라 활동 및 평가가 이루어짐	☐ 60
	장비 활용수준 향상을 위한 자체적 활동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계획에 따른 시행 및 평가가 일부 누락됨	☐ 40
	장비 활용수준 향상을 위한 자체적 활동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자체적 활동 및 평가가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짐	☐ 20
	장비 활용수준 향상을 위한 자체적 활동과 직원 수준에 대한 평가가 없음	☐ 0
주요 착안사항		

○ 인증심사원의 장비 활용수준 향상 활동 평가

-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검사장비 작동방법 및 활용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자체적 활동 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를 평가
- ※ 자체적 활동은 기관 내부적인 기술토론회, 자체교육 등 검사업무 수행과 관련한 검사원 자질향상을 위한 정기적·비정기적 활동을 모두 포함하며, 직원의 수준 평가를 위한 절차 및 평가결과 미비점 보완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 인증업무 수행 직원의 70% 이상의 인원에게 대해 검사기준 이해도 향상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를 인정하며, 70% 미만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단계 하향하여 평가한다.
- ※ 자체교육에 대하여는 A.2.2.1 평가항목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계획 수립 → 실행 → 직원 수준평가 → 미비점 보완” 등 기관 자체적인 활동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전산자료를 포함하여 문서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기술토론회는 계획 수립 → 토론실시에 따른 결과 문서가 있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

○ 인증심사원의 장비 활용수준 향상 활동 평가 방법

- 장비 활용수준 향상을 위한 자체적 활동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계획에 따라 활동 및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60”
- 장비 활용수준 향상을 위한 자체적 활동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계획에 따른 시행 및 평가가 일부 누락된 경우 “40”
- 장비 활용수준 향상을 위한 자체적 활동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자체적 활동 및 평가가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20”
- 장비 활용수준 향상을 위한 자체적 활동과 직원 수준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경우 “0”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물적기준)

평가항목A.3.1	평가기준 (배점 : 50)	평가결과
안전인증 장비 유지·관리 적정성	장비의 유지관리 지침이 있으며 자체 지침에 따라 유지·보수 및 검·교정이 실시되고 있음	☐ 50
	장비의 유지관리 지침이 있으나 자체 지침에 따른 유지·보수 및 검·교정이 일부 누락됨	☐ 35
	장비의 유지관리 지침은 없으나, 장비 유지·보수 및 검·교정이 실시되고 있음	☐ 20
	장비의 유지관리 지침이 없으며, 장비 유지·보수 및 검·교정이 실시되고 있지 않음	☐ 0
주요 착안사항	○ 안전인증 장비 유지·관리 적정성 평가 - 안전인증 심사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자체적 유지관리 지침(자체기준 등) 수립여부 및 장비 유지·관리상태 적정성 여부를 확인 ※ 장비의 유지·관리는 보유장비가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고장 또는 장애 등의 상태가 없도록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되, 주요 인증대상품을 고려하여 사용 빈도가 높은 장비 3종에 대해 작동상태 등을 확인한다. ※ 장비운용과 관련한 자체 지침상 검교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장비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하되, 검교정 실적은 주기 만료일 이전에 공인기관에 검교정 의뢰를 완료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안전인증 장비의 유지·관리 적정성 평가 방법 - 장비의 유지·관리는 평가반이 확인한 장비 3종 모두가 적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상위 점수를 부여하고, 적정하게 작동되지 않는 장비가 있는 경우 1단계 하향 평가한다. - 장비의 검·교정 주기설정의 적정성 및 누락여부를 확인하되, 평가기간 또는 자체 장비관리 지침 주기에 따라 적정 시기에 검·교정 여부를 평가 ※ 장비의 검·교정 주기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499호(2015.10.30)」 “KOLAS-G-013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기관 자체적으로 검·교정 주기를 설정한 경우는 그 근거를 확인한다. ○ 검사장비의 유지·관리 적정성 평가기준 - 장비의 유지관리 지침이 있으며 자체 지침에 따라 유지·보수 및 검·교정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 “50” - 장비의 유지관리 지침이 있으나 자체 지침에 따른 유지·보수 및 검·교정이 일부 누락된 경우 “35” - 장비의 유지관리 지침은 없으나, 장비 유지·보수 및 검·교정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 “20” - 장비의 유지관리 지침이 없으며, 장비 유지·보수 및 검·교정이 실시되고 있지 않음 “0”	

평가항목A.3.2	평가기준 (배점 : 50)	평가결과
법정장비 및 추가장비 활용 실적	심사결과서에 장비를 이용한 측정결과가 누락 없이 기입되어 있고, 법정장비 외 추가장비 활용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 50
	심사결과서에 장비를 이용한 측정결과가 누락 없이 기입되어 있고, 법정장비 외 추가장비 활용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40
	심사결과서에 장비를 이용한 측정결과의 일부 누락이 있고, 법정장비 외 추가장비 활용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 30
	심사결과서에 장비를 이용한 측정결과의 일부 누락이 있고, 법정장비 외 추가장비 활용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20
	심사결과서에 장비를 이용한 측정결과가 전부 누락되어 있고, 법정장비 외 추가장비 활용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 10
	심사결과서에 장비를 이용한 측정결과가 전부 누락되어 있고, 법정장비 외 추가장비 활용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0
주요 착안사항	○ 법정장비 및 추가장비 활용 실적 평가 - 안전인증에 따른 제품심사 수행시 기준에 적합한 장비(법정장비 및 추가장비)의 활용 여부 평가 ※ 법정장비 활용실적 확인은 해당 평가기간 중 임의로 선정한 10개의 심사결과서를 통해 확인하되, 현장방문 평가시 확인하는 인증대상 설비의 심사결과서가 최소한 2개 이상 포함되게 하여야 한다. ※ 법정장비 외 추가장비 활용실적 확인은 심사결과서를 포함, 안전인증 대상설비 기술지원 또는 기타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 결과 등에 해당 장비의 활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9의3) 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 법정장비 및 추가장비의 활용 실적 평가방법 - 심사결과서에 장비를 이용한 측정결과가 누락없이 기입되어 있고, 법정장비 외 추가장비 활용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50" - 심사결과서에 장비를 이용한 측정결과가 누락없이 기입되어 있고, 법정장비 외 추가장비 활용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40" - 심사결과서에 장비를 이용한 측정결과의 일부 누락이 있고, 법정장비 외 추가장비 활용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30" - 심사결과서에 장비를 이용한 측정결과의 일부 누락이 있고, 법정장비 외 추가장비 활용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20" - 심사결과서에 장비를 이용한 측정결과가 전부 누락되어 있고, 법정장비 외 추가장비 활용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10" - 심사결과서에 장비를 이용한 측정결과가 전부 누락되어 있고, 법정장비 외 추가장비 활용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0"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평가항목A.4.1	평가기준 (배점 : +10)	평가결과
포상실적	최근 2년 이내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인증 수행 인력에 대한 포상 실적 (대통령 : 5, 장관 : 4,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3, 지방자치단체(장) : 2)	(+10)
주요 착안사항	○ 최근 2년 이내 기관 또는 보유인력에 대한 포상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 대통령 포상 건별 5점, 장관 포상 4점, 공단 이사장 포상 3점, 지방자치단체(장) 2점 등을 부여하여 최대 10점까지 가점 부여 ※ 안전인증기관으로서의 포상 실적 및 안전인증 업무 수행 직원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포상실적을 전부 인정할 수 있다.	

평가항목A.4.2	평가기준 (배점 : -15 ~ -80)	평가결과
행정처분	최근 2년 이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처분개월수별 -15점 감점, 최대 -80점 감점)	-15~-80
주요 착안사항	○ 최근 2년 이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처리 - 업무정지 처분 개월수별 15점 감점하여 최대 80점까지 감점 처리	

B 업무성과

B.1 안전인증의 충실성

평가항목B.1.1	안전인증 접수처리대장 및 심사서류 관리	취득 점수	
평가항목B.1.1.1	평가기준 (배점 : 100)		평가결과
안전인증 접수처리대장 관리	접수처리대장 미기입항목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0.1% 이하		☐ 100
	접수처리대장 미기입항목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1% 미만		☐ 75
	접수처리대장 미기입항목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1% 이상, 2% 미만		☐ 50
	접수처리대장 미기입항목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2% 이상		☐ 0
주요 착안사항	○ 안전인증 접수처리대장(위험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 단, 방폭분야는 자체 보유 접수처리대장) 평가 - 안전인증 접수처리대장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미입력 여부에 대한 평가 실시 - 위험기계·기구 분야 누락 점검항목 • 서면심사 : 대상품 정보 [대상품(소)] • 제품심사(공통) : 대상품 정보 [대상품(소)] • 제품심사(개별) : 설치사업장 정보(사업장명, 주소, 전화번호. 단, 신청사업장과 동일한 경우는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하되, 실제로 동일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심사결과 중 유효기간 - 방폭기기 분야 누락 점검항목 • 서면심사 : 신청인 정보 (수입자 및 국외제조자를 구분하여 기재하였는지 여부. 단,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방폭구조 표시의 적정 여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방폭구조 적합성 여부) - 평가점수 산정방법 $\text{평가점수} = \frac{\text{누락(미입력)건수}}{\text{입력필요총 항목수} \times \text{심사건수}} \times 100(\%)$ ○ 안전인증 접수처리대장 관리 상태 평가방법 - 접수처리대장 미기입항목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0.1% 이하 “100” - 접수처리대장 미기입항목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1% 미만 “75” - 접수처리대장 미기입항목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1% 이상, 2% 미만 “50” - 접수처리대장 미기입항목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2% 이상 “0”		

평가항목B.1.1	안전인증 접수처리대장 및 심사서류 관리	취득 점수	
평가항목B.1.1.2	평가기준 (배점 : 50)	평가결과	
안전인증 심사서류 관리	심사서류를 체계적으로 누락문서 없이 분류하고 3년간 보존	☐ 50	
	심사서류 누락 10건 이하, 3년간 보존	☐ 30	
	심사서류 누락 10건 초과, 3년간 보존	☐ 10	
	심사서류 문서철 미실시 또는 3년간 보존 미실시	☐ 0	
주요 착안사항	○ 안전인증 심사서류 관리 평가 - 안전인증 심사서류에 대한 분류, 보존상태에 대하여 평가 ○ 안전인증 심사서류 관리 평가방법 - 심사서류를 체계적으로 누락되는 문서 없이 분류하고, 심사서류 3년간 보존 실시 “50” - 심사서류 누락문서 10건 이하, 심사서류 3년간 보존 실시 “30” - 심사서류 누락문서 10건 초과, 심사서류 3년간 보존 실시 “10” - 심사서류 문서철 미실시 또는 심사서류 3년간 보존 미실시 “0”		

평가항목B.1.2	평가기준 (배점 : 100)	평가결과
안전인증 관련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고시, 규정 및 지침 등) 준수여부	고시, 규정, 지침 누락없이 준수	☐ 100
	고시, 규정, 지침 미준수 1건 이하	☐ 70
	고시, 규정, 지침 미준수 1건 ~ 2건	☐ 40
	고시, 규정, 지침 미준수 2건 초과	☐ 0
주요 착안사항	○ 안전인증 관련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고시, 규정 및 지침) 준수 여부 - 안전인증 관련 고용부 고시 개정사항 및 고용부에서 시달된 규정·지침 등(이하 고시 등)을 기관 자체 내규 및 업무지침(이하 내부규정) 등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 준수여부 평가는 고시 등의 개정 이후 내부규정 반영이 최대 3개월 이내에 완료된 것을 인정하며, 평가기간 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가장 최근 개정된 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다만, 기관 자체적으로 해당 고시 등을 공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한 경우를 인정하며, 이때는 1개월 이내에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 안전인증 관련 법령, 규정, 지침의 준수상태 평가는 - 안전인증관련 고시, 규정, 지침을 누락없이 준수하여 업무 처리 “100” - 안전인증관련 고시, 규정, 지침 미준수 1건 이하 “70” - 안전인증관련 고시, 규정, 지침 미준수 1건 ~ 2건 이하 “40” - 안전인증관련 고시, 규정, 지침 미준수 2건 초과 “0”	

평가항목B.1.3	평가기준 (배점 : 150)	평가결과
안전인증 심사결과 적정성	심사항목 누락 또는 심사결과 판정 부적정 없음	☐ 150
	심사항목 누락 또는 심사결과 판정 부적정 3건 이하	☐ 100
	심사항목 누락 또는 심사결과 판정 부적정 6건 이하	☐ 50
	심사항목 누락 또는 심사결과 판정 부적정 6건 초과	☐ 0
주요 착안사항	○ 안전인증 심사 적정성 (본사 및 지사 평가) - 안전인증 심사 중 서면심사시 심사항목 적용·비적용 및 심사·시험 실시 및 결과의 적정성 여부 평가 ○ 평가 세부내용 - 유해·위험 기계·기구 분야 ● 평가기간 내 서면심사를 실시한 5건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기종은 가급적 균등하게 배분함을 원칙으로 함 (균등 배분이 어려울 경우 심사건수가 많은 기종을 우선 선정) ● 설계도서 등 기술문서와 심사결과서를 통해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방폭기기 분야 ● 평가기간 내 서면심사 5건, 제품심사 5건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심사건수가 많은 방폭구조를 우선 선정 ● 서면심사는 설계도서 등 기술문서와 심사결과서를 확인하고, 제품심사는 심사결과서와 시험성적서 등 시험결과를 확인 ○ 적정성 여부 평가결과 배점 - 안전인증 심사항목 누락 또는 심사결과 판정 부적정 없음 “150” - 안전인증 심사항목 누락 또는 심사결과 판정 부적정 3건 이하 “100” - 안전인증 심사항목 누락 또는 심사결과 판정 부적정 6건 이하 “50” - 안전인증 심사항목 누락 또는 심사결과 판정 부적정 6건 초과	

B.2 만족도 및 우수사례

평가항목B.2.1	평가기준 (배점 : 100)	평가결과
안전인증 사업장 만족도	안전인증 사업장 만족도 평균 90점 이상	100
	안전인증 사업장 만족도 평균 80점 이상	75
	안전인증 사업장 만족도 평균 70점 이상	50
	안전인증 사업장 만족도 평균 60점 이상	25
	안전인증 사업장 만족도 평균 60점 미만 또는 만족도 조사 미 실시	0
주요 착안사항		
○ 평가 시행방안 추후 마련		

평가항목B.2.2	평가기준 (배점 : 100)	평가결과
안전인증 우수사례 (정성평가)	우수사례 내용의 적정성	(100)
	타 인증기관(지사)에 적용 가능성 여부	
	제도로써 발전시킬 가능성 여부	
주요 착안사항		

○ 안전인증 우수사례 평가

- 안전인증 업무 수행과정에서 우수하게 추진한 사례에 대하여 정성적으로 평가

※ 우수사례 예시 : 인증대상 설비 위험요인 개선, 심사수행시 추가장비 활용 등 심사방법 개선, 안전인증 활성화 등

○ 우수사례에 대하여

- 내용의 적정성, 타 지정검사기관 적용 가능성 및 제도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여 최대 “100” 부여

※ 기관 자체적으로 우수사례를 작성하여, 평가시 평가반에 제출하고, 각 기관 평가 종료 후 평가반 회의시 별도 마련된 심사표에 따른 평가를 통해 각 기관별 평가점수 확정

B.3 안전인증 결과 신뢰도

평가항목B.3.1	평가기준 (배점 : 0 ~ -100)	평가결과
안전인증 확인심사 적정성	안전인증 확인심사 심사주기 산정 미흡, 연내 미 실시 또는 누락시 감점 (건별 20점 감점, 최대 100점 감점)	0~-100
주요 착안사항	○ 안전인증 확인심사 적정성 - 2016년도 확인심사 대상 사업장에 대한 확인심사 주기산정, 실시여부 및 실시시기 등을 확인하여 주기산정에 오류가 있거나, 연내에 심사(보완심사 제외)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확인심사가 누락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건별 20점 감점, 최대 100점 감점 ※₁ 2016년도 확인심사 대상 사업장은 각 기관별 고용부 실적보고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하되, 심사일자 및 실시여부 확인 등은 내부결재 문서 등을 통해 확인 ※₂ 확인심사 주기산정은 각 기관별 내부규정에 따른 산정결과를 확인하되, 전년도 및 전전년도 해당사업장 심사결과 확인을 병행	

평가항목B.3.2	평가기준 (배점 : 0 ~ -50)	평가결과
안전인증 심사처리기간 초과	안전인증 심사종류별 심사처리기간 초과건 발생시 감점 (건별 5점 감점, 최대 50점 감점)	0~-50
주요 착안사항	○ 안전인증 심사처리기간 초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4(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심사종류별 처리기간을 초과한 경우 건별 5점 감점, 최대 50점 감점 - 심사종류별 심사 처리기간 산정은 각 기관별 처리기간 산정기준에 따르며, 두 가지 이상의 심사가 동시에 신청되는 경우, 각 심사종류의 처리기간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